

의안번호	2210962
의 퇴 인	송옥주 의원
회 답 일	2025. 7. 21.
추계번호	25B3173

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5조제1항 (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)	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·유기 방지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<u>생체정보 등록</u>, <u>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부착</u> 등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함. 다만, 등록대상동물이 맹견이 아닌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·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함(제1항) ※ 등록대상동물의 등록방법으로 현재 대통령령¹⁾에서 정하고 있는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장착 외에 생체정보 등록을 추가함	의무규정
2	안 제15조제7항 (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) 신설	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등록동물의 등록 업무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(이하 이 조에서 “등록정보시스템”이라 함)을 구축·운영할 수 있음. 이 경우 제95조제2항에 따른 국가정보시스템 등과 연계할 수 있음	재량규정

1) 「동물보호법 시행령」 제10조(등록대상동물의 등록사항 및 방법 등) ③ 제1항에 따라 동물등록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별표 1에 따라 동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등록대상동물에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(이하 "무선식별장치"라 한다)를 장착한 후 신청인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등록증(전자적 방식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을 발급하고,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(이하 "동물정보시스템"이라 한다)을 통하여 등록사항을 기록·유지·관리해야 한다.

Ⅱ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5조제1항 (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)	·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15조제7항 (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) 신설	· 미대상: 농림축산식품부는 현행법 제95조 ²⁾ 에 따라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 중으로, 해당 시스템을 활용해 추가재정소요 없이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<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개요 > - (구축연도) '08년도 - (구축비용) 2,211백만원 - (주요기능) 동물등록, 구조동물보호, 길고양이증성화사업관리, 대국민포털 등

2. 상세 사유

□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방법에 생체정보 등록 추가(안 제15조제1항)

- 개정안은 현재 등록대상동물의 등록방법으로 대통령령³⁾에서 정하고 있는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장착 외에 생체정보 등록을 추가하는 것임
 - 현행법은 주택 및 준주택에서 기르는 개와 주택 및 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 중 월령(月齡) 2개월 이상인 개를 등록대상동물로 정하고,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가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동물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면 동물등록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검역본부장이 부여하는 동물등록번호를 부여

2) 제95조(동물보호정보의 수집 및 활용)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보호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통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여야 한다.

3) 「동물보호법 시행령」 제10조(등록대상동물의 등록사항 및 방법 등) ③ 제1항에 따라 동물등록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별표 1에 따라 동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등록대상동물에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(이하 "무선식별장치"라 한다)를 장착한 후 신청인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등록증(전자적 방식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을 발급하고,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(이하 "동물정보시스템"이라 한다)을 통하여 등록사항을 기록·유지·관리해야 한다.

받아 등록대상동물에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(이하 "무선식별장치"라 함)를 장착한 후 신청인에게 동물등록증(전자적 방식을 포함함. 이하 같음)을 발급하고,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등록사항을 기록·유지·관리하도록 하고 있음

[표 1] 동물등록방법

구분	등록대행기관	소유자	참고
1단계 (방문)	■ 등록대행기관 방문 (동물병원, 동물판매업소 등)	■ 소유자 신분증 지참	
2단계 (등록)	■ 동물등록신청서 작성	■ 소유자 정보 및 동물정보 입력	
3단계 (등록정보 생성)	■ 무선식별장치 삽입 - 내장형 삽입(동물병원 등) - 외장형 장착(동물판매업소) ■ 동물등록번호 발급·안내	■ 등록비 (시술비, 무선식별장치 구매, 등록 수수료* 비용 포함) - 내장형: 40,000~60,000원 - 외장형: 15,000~40,000원 * 내장형 1만원, 외장형 3천원	일부 지자체 등록비용 지원
4단계 (승인)	■ 시군구청 승인 - 동물등록증 발급	■ 동물등록증 직접 방문이나 우편 물 통해 수령	

자료: 농림축산식품부

- 현행법 제91조4)는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려는 자가 무선식별장치를 구입하고 등록 수수료를 내도록 하고 있으나,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현행법

4) 「동물보호법」 제91조(수수료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·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.

1.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려는 자

「동물보호법 시행규칙」 제56조(등록 등의 수수료) 법 제91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4와 같다. 이 경우 수수료는 정부수입인지,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, 현금, 계좌이체, 신용카드, 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·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.

■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[별표 14]

등록 등 수수료(제56조 관련)

1. 등록대상동물의 등록

가. 신규

1)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삽입하는 경우: 1만원(무선식별장치는 소유자가 직접 구매하거나 지참해야 한다)

2)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를 부착하는 경우: 3천원(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는 소유자가 직접 구매하거나 지참해야 한다)

나. 변경신고

소유자가 변경된 경우, 소유자의 주소,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, 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리거나 죽은 경우 또는 등록대상동물 분실신고 후 다시 찾은 경우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서면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: 무료

제15조⁵⁾에 따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동물 등록과 관련한 비용을 동물의 소유자에게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

-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등록관리시스템인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위한 비용 외에는 동물 등록 관련 비용을 지원하고 있지 않음
- 지방자치단체의 등록비 지원은 내장형·외장형 무선식별장치 구입비 및 시술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등록 수수료의 일부를 감면하는 방식 등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의 내용 및 금액이 다양함

[표 2] 동물 등록 관련 예산액 및 집행액(2024년)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예산액	집행액	비고
국비	308	308	동물등록관리시스템인 국가동물보호정보 시스템 운영 유지보수비
지방비	3,592	3,051	내장형 등록비 지원(외장형도 일부 지원)

주: 지방자치단체별로 동물등록비 일부를 자체 지원 중
자료: 농림축산식품부

- 개정안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방법에 생체정보 등록을 추가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등록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법 제15조에 따라 생체정보 등록 비용 보조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현 시점에서는 생체정보 등록을 통한 동물등록의 수요를 예측하기 어렵고, 비문(코주름), 안면, 유전자 등 생체정보 등록은 현재 실증특례를 추진 중이어서 안전성 검증 및 기술 표준 작성 등이 선행될 필요가 있어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움
-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, 현재 동물의 안면, 비문(코주름), 복정맥(배의 정맥) 데이터를 통한 개체식별 방식 개발 등 반려동물 소유자의 동물등록 편의성 제고 및 등록률 제고를 위하여 「동물보호법」에서 정한 내장형·외장형 이외 등록방식 다양화를 위한 실증특례가 추진 중으로, 안전성 등 검증 이후 기술 표준이 작성될 예정임

※ 첨부 [참고자료 2] 동물등록방식 다양화를 위한 실증특례 현황 참고

5) 제15조(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)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등록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Ⅲ. 부대의견

☐ 없음

Ⅳ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박인재	김신애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박인재	02-6788-4650	powerreset@nabo.go.kr

[참고자료 1] 동물등록 현황

【동물등록 제도 경과】	
◆ (도입) 동물보호와 유실·유기 발생 방지를 위해 '08.1.27.부터 시범 시행	
* 단계별 실시사항: ('08) 시범도입→('13) 전국 확대→('14) 등록 의무화→('22) 고양이 시범등록 전국 확대	
◆ (대상) ①주택·준주택에서 기르거나 ②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의 개	
◆ (등록 추이): ('13) 91,232마리 → ('14) 887,966마리 → ('22) 3,054,342마리 → ('23) 3,286,216마리 → ('24) 3,491,607마리	

자료: 「2024년 반려동물 보호·복지 실태조사 결과」 (2025.5. 농림축산검역본부)

[표 1] 지역별 동물 등록 현황(반려견 및 반려묘, 누적 기준)
(단위: 마리)

구분	2022	2023	2024	'24년 지역별 비율	전년 대비	
					증감	증감률
전국	3,054,342	3,286,216	3,491,607	100%	205,391	6.3%
서울	545,162	573,312	594,589	17%	21,277	3.7%
부산	196,842	206,631	215,839	6%	9,208	4.5%
대구	129,285	138,507	146,860	4%	8,353	6.0%
인천	203,777	219,030	232,349	7%	13,319	6.1%
광주	69,852	75,704	81,097	2%	5,393	7.1%
대전	95,910	103,156	109,432	3%	6,276	6.1%
울산	58,111	61,652	65,155	2%	3,503	5.7%
세종	15,007	16,969	18,698	1%	1,729	10.2%
경기	907,543	973,419	1,030,393	30%	56,974	5.9%
강원	98,559	106,727	113,370	3%	6,643	6.2%
충북	93,427	101,510	108,716	3%	7,206	7.1%
충남	118,729	129,927	142,138	4%	12,211	9.4%
전북	83,833	92,825	102,732	3%	9,907	10.7%
전남	91,481	102,468	111,575	3%	9,107	8.9%
경북	122,076	135,608	152,203	4%	16,595	12.2%
경남	168,976	186,656	198,878	6%	12,222	6.5%
제주	55,772	62,115	67,583	2%	5,468	8.8%

자료: 「2024년 반려동물 보호·복지 실태조사 결과」 (2025.5. 농림축산검역본부)

[표 2] 지역별 동물등록 대행기관

(단위: 개소, %)

구분	계	동물병원	동물보호 단체·법인	동물 보호센터	민간동물 보호시설	동물 판매업자
전국	4,408	3,889	14	159	12	334
		88.2%	0.3%	3.6%	1.3%	7.6%
서울	970	885	5	31	1	48
부산	288	257	0	8	1	22
대구	190	160	0	26	0	4
인천	228	213	0	8	0	7
광주	115	112	0	1	0	2
대전	115	107	0	1	0	7
울산	73	53	1	9	3	7
세종	20	20	0	0	0	0
경기	1324	1179	1	27	1	116
강원	139	107	3	4	0	25
충북	120	105	0	4	0	11
충남	136	123	2	5	0	6
전북	123	97	0	14	0	12
전남	140	96	1	8	2	33
경북	106	98	1	5	1	1
경남	254	215	0	6	3	30
제주	66	62	0	1	0	3

자료: 「2024년 반려동물 보호·복지 실태조사 결과」 (2025.5. 농림축산검역본부)

[참고자료 2] 동물등록방식 다양화를 위한 실증특례 현황

(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)

□ 동물등록제 개요

- (목적) 반려동물의 유실·유기 방지 및 실태파악 등을 위해 동물등록제* 도입
 - * 등록대상동물 :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 중 2개월령 이상의 개
- (절차) 분양 → 내장형*(또는 외장형) → 소유자 등록신청서 제출 → 지자체 등록증 발급 및 「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」 입력·관리
 - * 동물의 피하에 칩을 삽입하는 방법

□ 실증특례 추진 현황

- (추진배경) 반려동물 소유자의 동물등록 편의성 제고 및 등록률 제고를 위하여 동물보호법에서 정한 내장형·외장형 이외 등록방식 다양화 필요
- (주요내용) 동물의 안면, 비문(코주름), 복정맥(배의 정맥) 데이터를 통한 개 체식별 방식 개발
- (추진사항) 과기부 실증특례 진행 중

< 실증특례 추진 내용 >

생체인식 방법	업체명	특례기간
비문인식	아이싸이랩	2023.5.19.~2027.5.18.
	펫스니즈	2023.10.10.~2025.10.9.
	펫나우	2024.4.30.~2026.4.29.
	파이리코	2023.11.24.~2025.11.23.
안면인식	블록펫	2022.1.3.~2026.1.2.
	페이블	2023.6.15.~2027.6.14.
복정맥	피앤에스클라우드	사업 착수전

□ 실증특례 절차

